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9. 1. 24. (목), 14:00 ~ 16:2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심의 |
|---|-------------------------------|

【보고사항】

- | | |
|---|-----------------------------------------------------------------|
| 1 | 2019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민속-세계)
결과 보고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 |
|---|-----------------------------------------------------------------|

심 의 사 항

1.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심의

가. 제안사항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88호)>에 근거, 잠정목록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등재목록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 서울특별시에서 <한양도성, 서울의 옛 수도성곽(Hanyangdoseong, the Old Capital Wall in Seoul) / 이하, '한양도성'>을 신청함에 따라 우선등재목록 선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88호) 제9조

-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다. 진행경과

- 신청 수요 조사 실시
 - 대상 : 잠정목록 관련 광역지자체
 - 기간 : 2018.11.9. ~ 2018.12.31.
 - 결과 : 1건 접수 (신청자 : 서울특별시장 / 유산명 : 한양도성, 서울의 옛 수도성곽)

※ 참고 : 한양도성 등재추진 경과

- * 2012.11월 : 잠정목록 등재
- * 2014.11월 : 2016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대상 선정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2차 회의 / 2014.11.4.)
- * 2016.1월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 2016.3월~2017.2월 : 현지조사, 추가자료 제출, 이코모스 패넬회의 및 당사국 면담
- * 2017.3.9. : 이코모스 제2차 패넬회의 결과 '등재불가(Not be Inscribed)' 권고 결정
 - ※근거
 - 등재기준 iii, iv에 대해 유산관리 전통과 건축유형 면에서 전 인류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함
 - 이코모스 제1차 패넬에서 권고한 유산구역 확대를 수용하였으나, 여전히 완전성을 입증하고 있지는 못함 (사적지정구역+유실구역을 모두 연결 필요)
- * 2017.3.21. : 등재신청 철회
 - ⇒ 이후 "잠정목록" 지위 유지 중

* 단계 : 잠정목록 → 우선등재목록 → 등재신청 후보 → 등재신청 대상

라. 우선등재목록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우선등재목록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한양도성」 신청내용 /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 요약

* 상세 내용은 신청지자체 설명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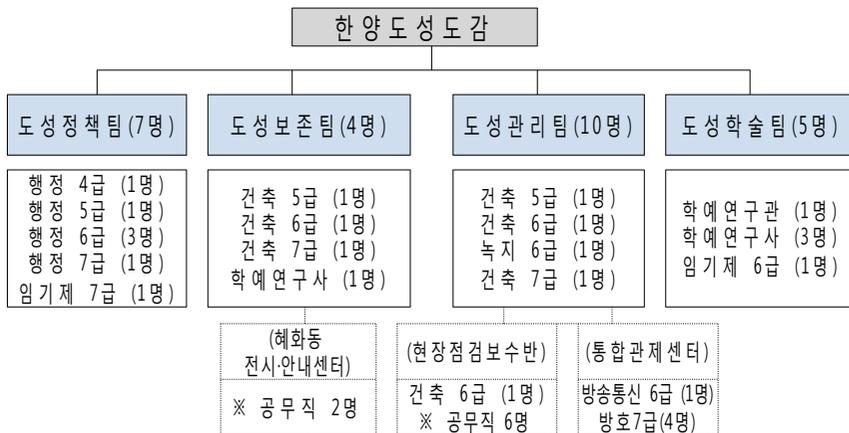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가) 등재신청 추진체계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명단 설명자료 참조)
 - 서울시장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 2명이 주재하며 모두 33명(당연직 12, 위촉직 21)으로 구성
 -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4조 제1항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함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추진
-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한양도성 문화유산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명단 설명자료 참조)
 - 19명(당연직 4, 위촉직 15)으로 구성
 -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4조 제4항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함
 - 한양도성 및 주변 지역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한양도성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민간의 건설 및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 한양도성 행정협의회 (명단 설명자료 참조)
 -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며 17명으로 구성 (전원 당연직)
 -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4조 제5항에 의해 설치된 협의조정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함
 -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에서의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등재 추진 조직 : 한양도성도감
 - 등재추진을 위한 과단위 실무 부서로 2012년 9월 28일부터 한양도성도감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단일 문화재에 대해 별도의 부서가 설치된 사례는 한양도성이 유일함
 - 세계유산 등재추진은 도성정책팀이 총괄하고 있으며 도성학술팀은 신청서 준비작업을 진행함. 도성보존팀과 도성관리팀은 유산가치 유지를 위한 정책 이행과 정비사업을 하고 있음
 - 구성 : 1과 4팀(1반, 2센터) 26명 (인력, 팀별 주요 업무 : 설명자료 참조)



나)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명단 설명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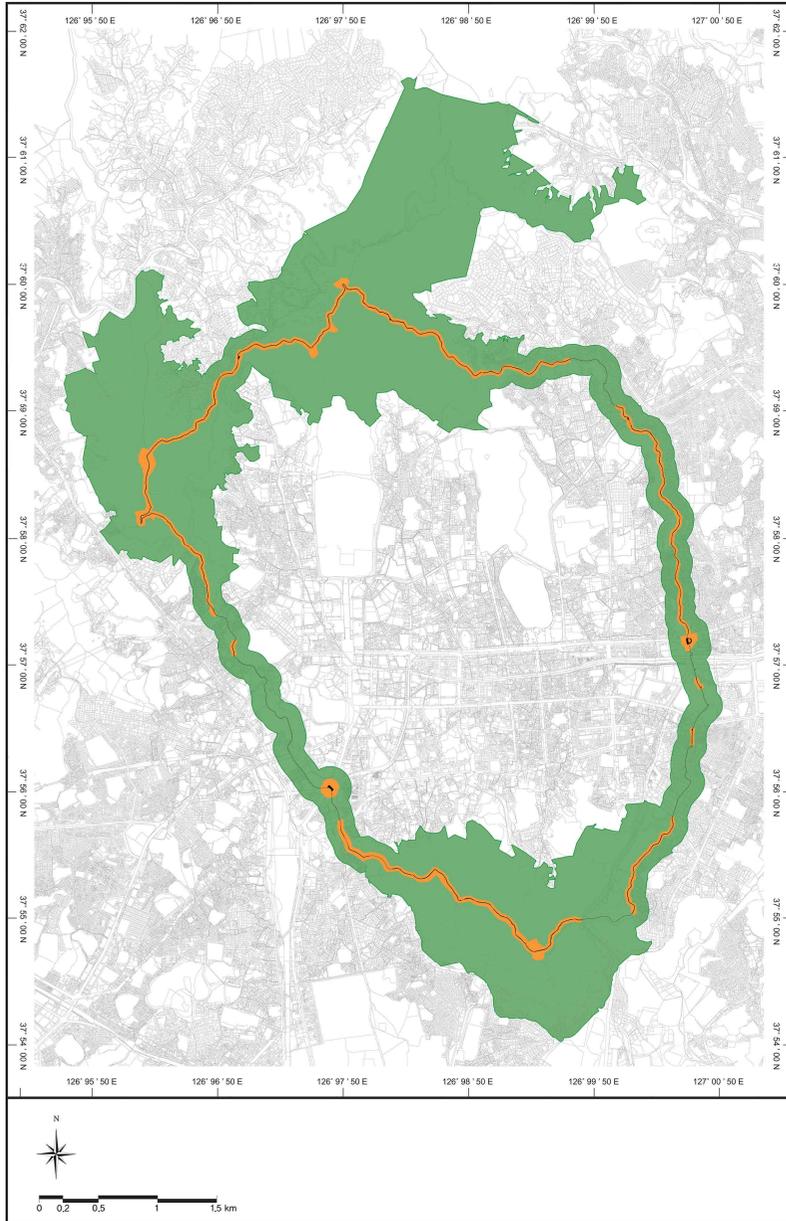
- 연구총괄, 비교유산(아시아 성곽), 유산가치(근대, 도시사), 세계유산제도, 보호관리(도시계획) 분야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설정 방향
 - 한양도성은 산지와 구릉지, 평지를 따라 축조되었고 총길이는 18.6km임
 - 현재 평지 구역은 일제강점기에 도로 및 시가지로 편입되면서 훼손된 부분이 생겨서 지상부에는 14.1km가 남아 있음
 - 신청유산은 지상부에 남아 있는 구간과 지하매장 구간을 유산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변 자연녹지지역과 일부 주거지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였음
- 유산구역 현황
 - 한양도성은 본래 단일유산이지만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도시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몇 군데 단절 부위가 생겨 형태상 8개 구간으로 분절되었음

[유산구역 현황]

일련 번호	구성구간	지역/지구	중앙점좌표	신청구성요소 유산구역면적 (ha)	완충구역면적 (ha)	
1	구간01	백악지역 인왕지역	E126°58'35" N37°59'30"	32.84	1052.94(ha)	
2	구간02	낙산지역	N37°58'81" E127°00'31"	9.13		
3	구간03	낙산지역	N37°34'04" E127°00'39"	0.5		
4	구간04	목멱지역	N37°33'50" E127°00'36"	0.48		
5	구간05	목멱지역	N37°33'17" E127°00'19"	3.96		
6	구간06	목멱지역	N37°33'05" E126°59'24"	12.65		
7	구간07	목멱지역	N37°55'98" E126°97'49"	1.93		
8	구간08	인왕지역	N37°34'14" E126°57'58"	0.57		
총계				1115(ha)	62.06(ha)	1052.94(ha)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 및 계획

가) 연구결과

- 등재신청기준 : 기준(iii), 기준(iv)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한양도성은 14세기 말 처음 쌓은 뒤 현재까지 600여년 간 본래의 선형과 함께 내부 보호 기능 일부를 유지하고 있다. 성돌과 성문 등 성곽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성곽의 변천을 보여준다. 동시에 한양도성 성곽 자체는 원명 교체와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 동아시아 국제 전쟁과 정세 변화, 제국주의의 침탈과 식민지배, 냉전체제와 전쟁 등 동아시아사의 주요 격변과 그것이 한국 서울에 미친 영향을 오롯이 드러내 보여주는 수도성곽으로서 특출한 증거이다.

- 기준(iv) :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한양도성은 14세기 몽골제국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전환과 그에 따른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의 산물로서, 동아시아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잡은 유교 이념과 자연지형을 최대한 존중하며 이용하는 풍수관념에 따라 내사산(內四山) - 사신사(四神砂)를 단일 선형으로 연결하여 계획적으로 축조되었다. 한양도성은 국가권력이나 국가의례를 행하는 장치이자 국왕의 존엄을 드러내는 표상으로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동아시아 중세 왕국 수도성곽의 탁월한 사례이다.

※ 참고 : 등재기준(OUV) 비교

기존 신청 OUV (‘16.1월 신청, ‘17.2월 보완)	이번 신청 OUV (‘18.12월)
(기준 iii) 수도 경계의 상징성, 지속적 도시성별관리의 탁월한 문화적 전통	(기준 iii) 600여년간 동아시아 역사의 주요 격변과 서울의 역사 및 한국사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수도성곽으로서 특출한 사례
(기준 iv) 자연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도시구조물, 전 구간 편축석성인 현존하는 유일한 수도 성곽	(기준 iv) 14~15세기 동아시아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은 유교이념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연지형을 최대한 존중하며 이용하는 풍수관념에 따라 축조된 수도성곽으로서 현존하는 탁월한 사례

나) 향후 추진계획

- 등재신청서 논리 보완 후속연구
 - 연구기간 : '19. 1월 ~ 등재후보 결정시 까지 계속
 - 등재후보 선정에 대비하여 국제 워크숍을 통해 OUV 지속적 보강
 - 도시성곽에 정통한 중국, 일본 성곽 전문가(2인)초청 자문토론 실시
- 해외홍보강화
 - '19. 1월 ~ 등재결정시 까지 계속
 - 국내 전문가의 해외 학술활동시 적극 지원을 위해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된 상태임
- 세계유산 관련 국제행사, 학술행사 유치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각종 국제회의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코모스 관련 행사시 한양도성 답사 지원, 연구자료 발표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유산가치를 직·간접적으로 홍보
- 과학적 완전성 보완
 - 잃어버린 돈의문과 성곽 단절구간 IT건축 복원
 -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이용 완전성 보완
 - 매장·노출유구 조사 및 도면작성 (고고학 연구)
 - 단절구간 표시사업 지속 추진
 - 한양도성 종합 안내판, 순성길 안내판 정비 등 통일된 안내체계 구축
 - 유적보존을 위한 기반조성
- 진정성과 보호관리의 우수성 유지
 - 회현자락 현장 박물관 조성(43,630㎡) : 2020년 2월 개관
 - 인왕구간 도성 탐방로 환경개선 ('19년 상반기 중 공사완료)
 - 각자성석 기록사업 및 풍화성돌 보존처리
 - 통합관제망의 지속적 확대와 유지관리
 - 변형이 심한 성벽구간 정밀계측 지속관리(25개소)
 - 비지정 유구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소유주 협의를 통한 유지관리 지속
 -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위험성벽 안전관리
 - 시민의 자발적 보존활동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
- 학술교류와 국제 홍보 강화
 - 아시아 국가들과 우호협력
 - 한양도성 우수사례 해외 발표

- 국내 학자와 중국·일본 세계유산 전문가 간 학술교류 지원
- 도시·건축·역사 등 관련 학계 인사의 해외 학술활동 지원
- 국내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협력 홍보

4) 보존 관리 계획

가) 보존관리 원칙

- 도성복원 원칙의 변화 과정
 - 한양도성은 20세기 도시화 과정으로 일부 훼손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훼손된 구간이 본격적으로 복원되었음
 - 1970년대 냉전체제 하에서 호국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복원이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문화유산의 보전관점에서 복원이 이루어졌음
 -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유산 제도를 고려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산보호의 원칙
 -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재인식 하여 유산에 대한 복원과 보호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에는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인왕산과 백악산의 개방, 동대문운동장 발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남산 회현자락 발굴, 송월동 근린공원 발굴 등을 수행하였음
 - 발굴 현장에서 유구가 발견되면 유구의 상태에 따라 복원을 포함한 보호 조치가 마련됨
 - 발굴된 한양도성의 유구는 단계적으로 유산구역에 편입시키고 있음. 더불어 성곽마을과 같은 성곽 주변 주거지도 함께 관리하고 있음

나) 보존관리체계

- 보존관리 체계
 - 한양도성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리하고 있음
 - 문화재청이 한양도성의 보존·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재정 및 행정관리는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와 5개의 자치구(종로구, 중구, 성북구, 용산구, 서대문구)가 함께 담당하고 있음
 - 한양도성도감과는 한양도성의 보존·정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한양도성의 보존, 복원 및 보호·관리, 학술연구 지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숭례문관리소, 홍인지문관리소, 한양도성연구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도방위사령부 등이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함께 협력하고 있음

○ 보호대책의 시행수단

- 한양도성은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숭례문, 흥인문, 창의문이 각각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음. 한양도성의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하고 있음
- 한양도성을 포함한 사산(백악산-낙산-목멱산-인왕산)의 주변지역은 개발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도시건축 관련 법률 및 군사관련 법률 등 여러 관련 법제도에 의해 엄격하게 보존·관리 하고 있음
- 더불어 한양도성은 관련 법제도 하에 실질적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으로 성벽 보호 지침, 성문과 문루 보호지침, 주변경관 및 지형 보호 지침, 성곽마을 관리지침, 수목 및 식생관리 지침, 순성로 관리지침,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침 등을 수립하고 지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과도한 관광객 탐방에 대비하기 위해 한양도성의 수용능력이나 방문객 추이를 분석하여 통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상기 관련 법제도 하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보존·관리하는 체계도 구축되어 있음

바. 「한양도성」 등재신청서(초안) /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 요약

- 제시한 유산명칭 : 한양도성, 서울의 옛 수도성곽
(Hanyangdoseong, the Old Capital Wall in Seoul)
- 구성유산 : 구간01(백악지역, 인왕지역) ~ 구간08(인왕지역)
- 유산구역 : 유산구역(62.06ha), 완충구역(1,052.94ha)
- 유산개요
 - 한양도성은 14세기 몽골 제국의 붕괴와 명의 건국이라는 동아시아의 격변과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왕조 교체의 산물로서, 14~15세기 동아시아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은 유교이념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연지형을 최대한 존중하며 이용하는 풍수 관념에 따라 1396년 계획적으로 축조된 조선왕조의 수도성곽임
 - 한양도성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수로와 육로 교통이 편리하면서 산줄기와 물줄기가 조화를 잘 이룬 곳에 자리 잡았음. 수도 한성부를 둘러싼 네 산인 백악산, 낙산, 인왕산, 목멱산의 능선을 따라 축성되었음
 - 한양도성은 수도 한성부 영역의 경계를 이루면서 임금과 도성민을 보호하는 시설로 축조되었음. 한양도성은 임금의 국가 경영과 권력 행사의 도구이자, 도성 출입과 나아가 도성 안팎의 통행을 금지하는 통제 수단이며, 국가 의례를 구현하는 장치였음
 - 한양도성은 동아시아사의 격변과 그로 인한 한국사의 변동을 오롯이 보여

- 주는 증거로서 가치를 갖고 있음. 한양도성은 14세기말 처음 쌓은 뒤 현재까지 그 위치와 선형(線形)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음. 600여 년간 세계사 및 동아시아사의 주요 격변을 겪으면서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음
-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보존하기 위한 법제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한양도성과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보존, 규제, 유지, 지원 등에 대한 협의 및 정책, 연구와 실무,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더불어 주민공동체, 민간단체(NGO), 시민참여단 등의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유산의 모니터링과 정책의 제안, 유산 활용사업의 기획이나 운영에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보호 관리를 통하여 한양도성은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특징과 가치

- [풍수의 사신사(四神砂)를 온전히 갖춘 동아시아 유일의 수도 성곽]
- 도성 건설에 사신사를 고려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사신사를 완벽히 갖춘 도성은 한양도성이 유일함. 사신사가 완비된 곳을 선정하여 그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았다는 점에서 한양도성은 동아시아 풍수관을 표현하는 도성 유형의 탁월한 사례임
 - 사신사는 도성과 외부를 구분하는 자연적 경계인 동시에 정신적 경계였음. 사신사의 능선을 따라 쌓은 한양도성은 자연과 인공의 독특한 결합을 보여줌
 - 한양을 수도로 선정한 이유 가운데 첫째가 겉과 속 산하 형세가 좋다(表裏山河形勢之勝)는 점이었음. 『동국여지승람』에는 “북쪽 화산(삼각산)을 진산으로 삼았으니 용이 내리고 범이 내려앉은 형세가 있다.… 그 형세가 동방의 제일이고 천하의 요해 같은 곳이다.”라고 했음
 - 사신사를 완벽히 갖춘 한양도성은 동아시아의 다른 도성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관과 평면 형태를 지니게 되었음

- [유교 이념에 따른 중세 동아시아 도시계획의 탁월한 증거]
- 한양도성은 14세기말 유교 이념에 따라 계획, 조성된 동아시아 수도 성곽의 탁월한 사례임
 - 14세기 말 신유학 국가를 표방한 조선은 유교의 원리를 정치 이념이자 생활 윤리로 정착하고자 하였음. 이에 도성 곳곳에 유교적 상징들을 채용하였음
 - 각 문의 이름은 유교가 숭상하는 덕목인 사단(四端),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넣어 지었음. 문은 흥인문(興仁門), 서문은 돈의문(敦義門), 남대문은 숭례문(崇禮門)이라고 하였으며 북문은 ‘지(智)’자와 뜻이 통하는 ‘정(靖)’자를 넣어 숙정문(肅靖門)이라고 하였음
 - 축성 공사도 유교적 중앙집권 국가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전국의 백성을 동원하여 수행하였음. 전국 백성이 축성에 동원된 증거는 성벽에 새겨진 글자들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유교 이념은 도성의 규모와 형식에도 영향을 미쳤음. 조선은 유교적 사대 교린(事大交隣)의 국제 관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제후국의 위치를 지켰음
- 중국 도성은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3개씩의 문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한양도성은 사대교린의 평화적 국제 관계를 전제로 도성을 지었기 때문에, 각 방향에 2개씩의 문만 뚫으로써 그 위계를 한 등급 낮추었음. 치성(雉城), 각루(角樓), 망대(望臺) 등의 군사적 기능을 가진 시설은 대폭 생략했음

[도성민의 삶을 규율하는 시설]

- 한양도성은 조선의 수도 한성부의 경계이자 왕과 주민들을 보호하는 시설임. 도성은 종묘 사직, 궁궐과 더불어 수도의 삼대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였음
- 한양도성은 궁성(宮城)을 포용하는 수도 성곽으로서 최고의 위상을 가졌음. 도성의 성문과 성벽은 자체로 왕의 권위와 존엄을 표시하는 상징물이었음
- 한양도성의 성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각에 열고 닫음으로써 도성민의 일상 생활을 규제하였고, 왕의 뜻에 반하는 관원들이 도성에 머물거나 들어올 수 없게 하였으며, 무당이나 승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장치였음
- 또한 왕과 그 이하 신민들 신분에 따라 출입하는 문을 구별하는 등 왕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질서와 그에 따른 의례를 구현하는 장치로도 이용되었음. 한양도성의 성문과 성벽은 왕의 권위와 존엄을 표시하는 대표적 표상이었음. 승례문은 사신들의 목적지이자 출발지로서 나라의 문[국문, 國門]으로 인식되었음

사. 전문가 검토 의견

- (1) 회의일시 : 2019.1.11.(금) 15:30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2) 검토자 : ○○○ 충북대학교 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공주대학교 교수
- (3) 검토의견(종합)
 - 현재 설정한 등재기준을 좀 더 심각하게 논의, 방향 재점검이 필요할 듯 함
 - 한양도성의 특징을 풍수, 유교, 의례와 같은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있어서 유산의 기술적·형태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이 빈약함
 - 한양도성 내 '서울의 옛 수도 성곽'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성곽 자체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 및 유사한 시기 동아시아에서의 도성간 비교 연구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 외에도 보고서의 전체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에 맞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고서가 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서울 성곽 자체의 고고학적, 건축학적 우수성, 독창성 등이 잘 드러나야 할 것이나 현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보임

- **(설명)** 실제 유산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음. 과거와 현재를 대비, 발굴조사 당시의 모습 등등의 정보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유교적 이념과 풍수사상에 대한 개념 적용에 대한 개념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한양 도성의 역사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서울 성곽 자체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부족해 보임
- **(탁월한 보편적 가치 정당화)** 한양도성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조선왕조의 왕성으로 600년을 지속하고 관리보존된 유산이자, 대도시 속에 살아남은 도시 성곽으로 문화유산가치는 인정됨. 그러나 '동아시아의 주요격변'과 '서울의 역사 및 한국사의 상호 작용', '유교이념 반영', '풍수관념에 따라 축조' 등의 서술부분에서 축성 공법상의 탁월한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유교이념과 풍수관념의 점점, 왕도의 역사 기능과 도성의 연관성 등의 측면에서 다소 애매하고 상충되어 보임
- **(비교연구)** 성곽 입지 및 축조 기술 등을 중심으로 성곽 자체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 및 동일 문화권 도성 성곽과 한양 도성 성곽과의 구체적이고 충실한 비교 연구가 필요함. 한양 도성 성곽의 뛰어난 축성 기술과 특이점 등을 부각할 수 있는 비교연구 방식을 채택하도록 할 것
- **(유산구역/완충구역 설정과 완전성)** a)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의 포함 여부, b) 유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과 과정이 완벽하게 구현될 만큼 충분한 규모인지의 여부, c) 개발 및/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와 관련하여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못함
- **(진정성)** 형태와 디자인/소재와 재료/용도와 기능/전통, 기법, 관리 체계/위치와 환경/언어와 여타 형태의 무형유산/기풍과 정서/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과 관련하여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못함
- **(보호관리계획)** 국내법적으로 유효한 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설명, 통합보존관리 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은 비교적 충실한 편임

아. 검토 의견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88호) 제9조에 제시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였던 주요 쟁점들이 본 단계 및 향후 단계에서 보완·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자. 참고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현황

명칭	영 문 명	소 재 지	등재년월	비 고
강진도요지	Kangjington Kiln Sites	전남 강진	1994.9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Mt. Soraksan Nature Reserve	강원 속초	1994.9	
남해안 공룡화석지	Sites of fossilized dinosaurs throughout the Southern seacoast	전남 해남, 화순, 여수 경남 고성	2002.1	
염전	Salterns	전남 영광, 신안	2010.1	
서남해안 갯벌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s	전북 고창, 부안 전남 순천, 보성, 무안, 신안	2010.1	우선등재목록, 등재신청 대상 (‘19.1월 등재신청서 제출)
대곡천 암각화군	Daegokcheon Stream Petroglyphs	울산 울주	2010.1	
중부내륙 산성군	Ancient Mountain Fortresses in Central Korea	충북 청주, 제천, 충주, 괴산, 단양, 보은	2010.1	
우포늪	Upo Wetland	경남 창녕	2011.1	
외암마을	Oeam Village	충남 아산	2011.3	
낙안읍성	Naganeupseong, Town Fortress and Village	전남 순천	2011.3	
한국의 서원	Seowon, Confucian Academies of Korea	대구,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2011.12	우선등재목록, 등재신청 대상 (‘18.1월 등재신청서 제출)
한양도성	Seoul City Wall	서울시	2012.11	심의대상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Goryeong Jisandong Daegaya Tumuli	경북	2013.12	우선등재 목록
김해·함안 말이산 가야고분군	Gaya Tumuli of Gimhae-Haman	경남	2013.12	우선등재 목록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전남 화순	2017.1	

차. 의결사항

- 보류(출석 7명, 보류 6명, 기권 1명)
- 다음 내용을 보완한 후, '19년도 하반기 이후 재심의함
- 1) 1차 등재 신청 과정에서의 심사 지적사항
- 2) 성곽 현황, 축성기술 등 기초조사
- 3) 국내외 유사유산 비교연구
- 4) OUV 명확화
- 5)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가 검토 의견

붙임. 「한양도성」 등재신청서(안) 설명자료(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보 고 사 항

2. 2019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민속-세계)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내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심의를 위해 개최한,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민속-세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2018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민속-세계유산)(2018.2.13.) 심의 결과 “구역조정 대상지의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대책을 제출받아 소위원회 구성하여 조정여부 결정토록 함”으로 의결됨에 따라,
- 2019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민속-세계)를 구성하여 해당건을 심의하였음
- 소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1.15.(화) 14:00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참석자 : 민속분과(주관) ○○○, ○○○ 위원, 세계유산분과 ○○○, ○○○ 위원
 - 안건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 심의

다. 주요내용 (합동분과 소위원회 회의)

- (1) 신청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내용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문화재 지정구역 변경
 - 당초 1,577필지 6,495,535㎡, ⇒ 변경 1,556필지, 6,483,158㎡(감 12,377㎡)
 - 주요내용 : 마을 입구를 병산삼거리 부근에서 고개마루(금줄 설치 지점)로 조정
- (4) 회의결과 : 원안가결

라. 조사 및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이배용·박강철·장석하, 문화재전문위원 이용준 /

2018.1.19.

- 2016년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 지정 당시 마을 진입구를 확장 지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으로 부터 500m) 보존지역의 범위가 너무 확장되어,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권역 설정을 통한 위계화 작업을 통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더욱 강화하여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정의 가능성을 줌으로서 보존을 둘러싼 주체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금회 지정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구역은 마을 입구 도로의 고개마루(탕건비와 금줄이 설치된 곳)를 경계로 조정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을 둘러싼 주체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임
- 다만 금회 조정으로 인한 세계유산 코어존과 버퍼존은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금회 조정 구역이 하회마을을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조정 구역 신청안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기타 의견 : 전 문화재위원 이상해 / 2018.1.12.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 하회마을 입구의 지정구역은 마을 입구 개발행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당초 하회마을 진입구 삼거리(246)까지 지정하였으나, 금회 조정하고자 하는 마을 입구 고개마루(탕건바위와 금줄이 설치된 곳)를 경계로 지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하회마을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247-1, 245, 243-3, 243-2) 일대를 포함한 구역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신청 시 주차장을 유산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하회마을의 경우도 주차장이 있는 곳의 지정구역은 주차장을 유산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246대)와 (247-1차) 지적의 경계선으로 조정함이 좋겠음

(3) 검토의견 : 근대문화재과

- 안동시에서는 효부골 일원에 대하여 「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시 경관계획(2018.2.19.)’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의 계획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처리방향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출석 6명, 접수 6명)

「안동 하회마을」 문화재구역 조정

□ 문화재구역 조정 개요

- 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변경사항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필 지	1,577필지	1,556필지	-21필지
면 적	6,495,535㎡	6,483,158㎡	-12,377㎡

- 변경사유 : 2016년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 이후 지역주민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보존구역 조정
- 추진경과
 - 2018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심의(조건부)(2018.2.13.)
*구역조정 대상지의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재대책 제출받아 소위원회 구성하여 조정여부 결정
 - 2019년 1월 : 경관훼손방지대책 제출(안동시 → 문화재청)
 - 2019년 제1차 합동분과(민속-세계유산) 소위원회(2019.1.15.) : 가결

□ 문화재 구역 조정현황



□ 현황 사진



※ 현재 **큰고개에 금줄이**
쳐져 마을어귀임을
알리고 있음